

『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9년 5월 4일

나. 발 의 자 : 길윤옥, 권기만, 김상조, 김익수
박광석, 박교상, 박순이, 임춘구
장세만, 전인철, 정근수 (11명)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5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5월 18일

제1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길 윤 옥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
-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“여성장애인”과 “출산 지원금”의 정의를 규정함 (안 제2조)
- 출산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으로 규정함 (안 제3조)

- 출산 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신생아 1인당 장애 1~2급은 1,500,000원, 장애 3~4급은 1,000,000원, 장애 5~6급은 700,000으로 지원함 (안 제4조)
- 지원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며, 여성장애인이 유고(사망 등)시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자로 하고,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토록 규정함 (안 제5조)
- 읍면·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, 지급함 (안 제6조)
-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함 (안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장애인복지법 제32조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장애여성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임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조례는 총 8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, 용어정의를 규정하고
-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신생아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으로 하며

- 안 제4조 출산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신생아 1인당 장애 1~2급은 1,500,000원, 장애 3~4급은 1,000,000원, 장애 5~6급은 700,000원 으로 규정함
- 안 제5조 및 제6조 출산지원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
- 안 제7조 출산지원금 대상이 아닌자에게 지급된 때에는 환수 조치 토록 함

○ 검토결과

-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게 임신·출산·육아의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되며
- 또한 여성장애인 대부분이 노동력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출산 후 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성권에 관한 시의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 보여지며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